

리스보증약관

제1조 (보증책임)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리스이용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시설에 대한 대여금(리스료)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이행기일이 보증기간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2.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3. 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대여시설(이하 “리스물건”이라 한다)이 리스이용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리스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때
5. 제5조,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3조 (보증채무의 이행한도) ①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 증 금 액

$$\text{지급보증금} = \text{리스계약해지일의 미회수채권액} \times \frac{\text{보증계약체결일의 규정손실금}}{\text{보증계약체결일의 규정손실금}}$$

② 리스계약이 실행된 이후 중도에 보증계약을 하는 경우에 제1항의 보증계약 체결일의 규정손실금은 보증계약체결일이 속한 해당년도초의 규정손실금에서 보증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로 계산한 규정손실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③ 지급할 보증금이 외화표시인 경우에는 리스계약 해지일에 있어서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화로 합니다.

제4조 (리스기간 개시일의 통지) 보증채권자는 리스기간 개시전에 발급된 보증서의 리스기간이 개시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합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5조 (리스계약의 변경) 보증채권자는 리스계약에 관하여 리스물건의 종류, 리스계약해지 사유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의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 (보증서의 효력상실) 이 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되거나,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 보증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보증사고의 통지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지체없이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청구시에는 보증금청구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서 또는 그 사본
2. 리스계약해지 통지서 사본
3. 보증사고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4. 기타 조합내규에서 정한 서류 등

②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보증채무의 확인조사) ① 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손해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보증금 지급시기) 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청구하여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1조 (대위 및 구상) ①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합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보증채권자는 보증금 수령후 리스물건을 양도·채리스·기타 처분을 하여 얻은 금액중 손해충당을 한후 그 처분 및 충당내역을 조합에 통지하고 잔존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④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이 보증서에 의한 권리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배한 경우 조합은 보증책임이 없습니다.

제13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보증서를 발급한 조합의 영업점 또는 조합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중에서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